

# 국내 번역 윤리 규정의 현황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 고찰

신지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Jisun Shin (2012), The Status of and Need for Translation Ethics.**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translation ethics and professional code of translator ethics. The underlying premise of the discussion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translation ethics contributes to higher quality of translation, thus improving the public perceptions of translators and raising the translators' status in society. The ultimat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line the urgent need for ethical code of translation in translator associations as well as among individual practitioners. In an attempt to illuminate the historic development of translation ethics in translation studies, Chesterman's four models of translation ethics are introduced. Next, the paper presents the well-constructed ethical code of translation associations abroad, and demonstrates a complete lack of ethical concerns in the field of translation in Korea.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Korea)*

**Keywords:** translation ethics, translation charter, translation association, code of ethics

##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번역은 실무 중심의 기술로 간주되다가 연구할 가치와 필요가 있는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어, 문장 등의 등가를 따지는 미시적 차원에서 이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거시적 차원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내에 이 분야의 연구 진척 속도는 실로 눈부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은 직관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일축하고

www.kci.go.kr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번역 과정과 번역 행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번역의 학문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번역이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사의 위상은 학문적 위상만큼 빠르게 높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번역은 실무와 이론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이다. 이 분야의 이론적 발전이 실무자의 번역 수행에 도움을 주고, 실무자의 축적된 경험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번역학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가 각각 학계와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서 학계에서 인정받는다면, 실무 번역사는 책임감 있게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번역사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번역을 수행한다는 신뢰가 사회 전반에 퍼질 때 번역사는 참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이와 더불어 스스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변호사들은 변호사 선서를 한다. 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선서를 하는 모든 의사와 변호사들이 윤리적일 것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장치를 통하여 선서를 하는 당사자들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신중히 되새길 것이며, 사회 일반인들은 그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는 아니더라도 모종의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 직업이나 업무가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확립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집단 차원에서 윤리 현장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번역사의 위상과 번역사의 직업적인 안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번역 윤리와 번역사 윤리에 대해 국내 번역업계와 학계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집중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번역학 저널 <The Translator>의 특별호(2001)에서 윤리 현장의 필요성을 제안한 Chesterman(2001)의 논의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우선 번역 윤리<sup>1</sup>란 무엇이며, 번역

윤리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학계와 업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소개하고, 번역 윤리를 제정하여 명확히 강조하는 해외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에서 번역 윤리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번역 윤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

Pym(1992)은 번역 윤리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번역문이 목표어 문화와 목표어 독자보다는, 원문이나 원문 저자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윤리이고, 두 번째는 번역사의 직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번역사들과의 관계, 의뢰인들과의 관계를 제어하는 현실적인 윤리이다. 번역 윤리를 논할 때, 학계에서는 흔히 첫 번째 윤리(번역 윤리)에 집중하고, 업계에서는 두 번째 윤리(번역사 윤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윤리적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일반적으로 잘된 번역이 윤리적으로 옳은 번역이고, 잘못된 번역이 윤리적으로 그른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즉, 번역의 질과 완성도를 두고 번역 윤리를 논할 때 윤리적 번역사란 번역을 잘한 번역사이다. 번역 윤리를 논할 때, 번역 윤리가 무엇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바로 ‘잘된 번역이란 과연 어떤 번역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번역의 역사만큼이나 직역과 의역, 등가와 불가역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제각기 좋은 번역에 대한 기준이 달라, 좋은 번역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를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번역 윤리를 둘러싼 서구의 논의는 번역학의 관심이 ST(원천 텍스트)에의 충실성에서 TT(목표 텍스트)의 목적과 TT 독자에게로 옮겨가면서, 누구에게 충실한 번역을 윤리적 번역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Koskinen(2000)이 제기하듯 충실성(fidelity)을 기준으로 한 이전의 담론으로는 오늘날 변화한 번역계의 실상

<sup>1</sup> 글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후로는 번역 윤리의 두 가지 측면(번역 윤리, 번역사 윤리) 중 한 가지 측면만을 구분하여 논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 윤리로 표기하고 번역사 윤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번역 윤리에 대한 원론적 담론과 번역사의 직업적 윤리를 균형감 있게 고찰한 Chesterman(2001)의 연구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번역 윤리와 관련하여 서구에서 논의되어 왔던 기존의 논의 내용을 Chesterman은 다음의 네 가지 모델로 정리하였다<sup>2</sup>.

번역 윤리에 관한 첫 번째 모델은 재연(representation) 측면에서의 윤리이다. 이 모델에서는 번역사가 지켜야 할 윤리로, 원문이나 원문 저자의 의도를 추가·삭제·변경 없이 충실하게 거울처럼 반영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원문을 그릇되게 재연하거나 대변 또는 반영하였을 경우를 비윤리적인 번역 행위로 간주한다. 흔히 번역 대상 텍스트가 저자의 스타일을 중시하는 문학 텍스트인 경우, 번역사의 해석이나 개입 없이 원문에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번역사의 윤리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번역 윤리를 거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연상하는 잘된 번역의 특징으로, 전통적으로 원문을 번역문보다 절대 우위에 두던 분위기에서 뿌리내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서비스 측면에서의 윤리로, 이 모델에서는 번역을 상업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위의 첫 번째 모델이 원문에 충실성(fidelity)을 가장 중요한 윤리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모델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충성도(loyalty)가 핵심 윤리이다. 번역을 의뢰한 의뢰인이 번역 텍스트가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원문의 생경한 요소들을 번역문에서는 친근하게 바꾸어 주기를 바랄 수 있다. 또는 원문의 내용을 간단히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하여 요약 번역을 요구할 수도 있다. 원문을 그대로 충실히 번역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을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인 번역임에 틀림없다.

세 번째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윤리이다. 이 모델에서는 원문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번역하였는지 여부가 번역 윤리의 가장 중요한 잣대이다. 이 모델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에서 보면, 윤리적인 번역사란 이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재자라는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번역사이다. 점차 번역사를 단순한

언어 치환자가 아닌, 문화 교류의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번역사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한다면 윤리적인 번역사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화용론적 측면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옮기는 번역사가 될 것이다. 재연 모델을 중시하여 원문에 있는 그대로만 옮기거나, 서비스 모델을 중시하여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만 전념하여 번역한다면 텍스트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은 간과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델은 번역 규범(norm) 측면에서의 윤리이다. 번역 규범은 적절한 번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회와 일반 독자의 기대치를 의미하며, 그에 따라 번역 결과물의 수용 정도가 결정될 수 있는 잣대이다. 이 모델에서 윤리적인 번역사란 규범에 따라 번역을 하여 독자나 의뢰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번역사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번역서에 대한 기대나 번역사에 대한 기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거시적·미시적 규범에 반하는 번역을 하였을 때 윤리적인 번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지기 쉽다.

이상으로 번역학계에서 논의되어온 윤리 관련 논의를 네 가지 모델로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Chesterman(2001)이 지적한 사항들을 고찰해 보겠다.

Chesterman(2001)이 지적하는 위 모델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번역의 종류와 특성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문학 번역이나 성경 번역을 할 때의 번역사 윤리에 적합하고, 다른 모델은 기술 문서를 번역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번역 윤리를 전반적인 번역 일반과 번역사 일반에 적용할 수 있어야 모두의 호응과 참여 하에 윤리 지침을 확립 전파할 수 있으므로 각 모델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Chesterman이 언급한 각 모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연 모델의 경우에는 원문과 번역문의 위상 차이, 등가를 둘러싼 환상 등의 문제로 원문을 완벽하게 재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번역시 원문을 번안하거나 개작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윤리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여전히 번역문이 원문을 완벽히 재연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번역문보다는 원문 중심의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 이는 최근 번역문을 읽을 독자를 고려하여 번역문이 원문만큼이나 중요하거나 또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기능주의 동향과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원문을 완벽하게 재연하는 것이 윤리적인 번역이자 번역사의 윤리라

<sup>2</sup> 네 가지 모델 분류는 Chesterman의 연구 내용을 따랐으나, 각 모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고 주장하기 어렵다.

둘째, 서비스 모델은 번역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번역사의 불가시성(invisibility)을 미덕으로 삼아 번역사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번역을 굳이 업종으로 분류하자면 서비스업이라는 것에 수긍은 하면서도 번역이 단순히 의뢰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에 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종류의 번역도 있지만,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번역도 있기 때문이다. 워낙 번역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다양하고,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번역관이 서로 달라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번역을 번역의 윤리라고 하기 어렵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번역사의 책임을 범문화 간 중재 역할로 확대하는데, 이러한 책임은 번역사보다는 독자나 의뢰인에게 더 주어져야 할 것 같다. 모든 의뢰인과 독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중재 역할을 번역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앞의 서비스 모델을 논의할 때 언급되었던 것처럼 번역사의 재량을 발휘해야 할 텍스트가 있는가 하면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텍스트도 있어 윤리적인 번역을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만 정의하기 어렵다.

넷째, 규범 모델은 번역에 있어서 변화나 개선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번역 행위의 결과로 시대에 따라 규범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즉, 규범을 준수하는 번역이 윤리적인 번역이고, 윤리적인 번역이란 번역 규범을 준수하는 번역이라고 정의한다면, 각 언어권에서는 다채로운 언어의 생성과 소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이 도착어 언어권에 새로운 언어와 문체를 소개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번역사들이 좋은 번역이란 정해진 규범을 따르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여 개성적인 시도와 창의적인 발상을 억누른다면 번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윤리 모델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지거나, 각 모델의 특성에 따라 번역의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네 가지 모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번역 윤리로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서구 번역학계에서 그간 번역 윤리와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 번역에 종사하는 전문가 모두가 윤리 지침으로 삼기에 적합한 모델을 도출하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된 내용 이외에 번역업계나 실무 종사자들의 협회

에서 번역 윤리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해외의 현황을 고찰하는 것은 번역 윤리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달리 번역사 윤리 헌장이나 강령이 명시화되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

## 2.2. 해외 번역사 관련 단체의 번역 윤리 강령 사례

해외의 경우 일찍이 번역사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중시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회에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번역 윤리 강령이나 번역사의 직업 윤리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창에 ‘translation ethics’ ‘translator’s ethics’ ‘translation, code of ethics’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관련 웹사이트와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윤리 강령을 싣고 있는 관련 페이지를 정리해보면 단체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정부 산하 기관
- 전문 번역사 협회
- 번역 회사나 에이전시
- 개인 번역사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일부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윤리 규정 관련 해외 현황

기관 구분	기관 이름	비고
번역협회	FI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a href="http://www.fit-europe.org/.../CODE_PROF_PRACTIC">http://www.fit-europe.org/.../CODE_PROF_PRACTIC</a>
	ATA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a href="http://www.atanet.org/aboutus/code_of_professional_conduct.php">http://www.atanet.org/aboutus/code_of_professional_conduct.php</a>
	AUSIT (The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a href="http://www.ausit.org/page/code_of_ethics.html">http://www.ausit.org/page/code_of_ethics.html</a>

번역협회	ATLF (The Association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de France)	<a href="http://www.atlf.org/Code-de-Deontologie-du-Traducteur.html">http://www.atlf.org/Code-de-Deontologie-du-Traducteur.html</a>
	Tradulex	<a href="http://www.tradulex.org/Regles/ethics_CEATL.htm">http://www.tradulex.org/Regles/ethics_CEATL.htm</a>
	IAPT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 href="http://www.aipti.org/eng/code_of_ethics/">http://www.aipti.org/eng/code_of_ethics/</a>
	NETA (The New England Translators Association)	<a href="http://www.netaweb.org/cms2/about-neta/code-of-professional-ethics">http://www.netaweb.org/cms2/about-neta/code-of-professional-ethics</a>
	ITI (The Institute of Translation & Interpreting)	<a href="http://www.iti.org.uk">http://www.iti.org.uk</a>
	NAJIT (The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 & Translators)	<a href="http://www.najit.org/about/NAJITCodeofEthicsFINAL.pdf">http://www.najit.org/about/NAJITCodeofEthicsFINAL.pdf</a>
	ATIO (The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Ontario)	<a href="http://www.atio.on.ca/about/bylaws.php">http://www.atio.on.ca/about/bylaws.php</a>
	ATIA (The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Alberta)	<a href="http://www.atia.ab.ca/index.php/about/code_of_ethics">http://www.atia.ab.ca/index.php/about/code_of_ethics</a>
	AMIT (The Association of Maine Interpreters & Translators)	<a href="http://www.mainetranslators.org/about/code-of-ethics/">http://www.mainetranslators.org/about/code-of-ethics/</a>
	AJIT (Texas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 & Translators)	<a href="http://www.tajit.org/code-of-ethics">http://www.tajit.org/code-of-ethics</a>
번역 에이전시	Tech Lingo	<a href="http://www.tech-lingo.com/Code%20of%20Ethics.htm">http://www.tech-lingo.com/Code%20of%20Ethics.htm</a>
	Language Marketplace	<a href="http://www.languagemarketplace.com/Interpreters_Toronto_Resources.html">http://www.languagemarketplace.com/Interpreters_Toronto_Resources.html</a>
	Corporate Development Group of Companies International	<a href="http://www.cdgi.com/translation/code_of_ethics.htm">http://www.cdgi.com/translation/code_of_ethics.htm</a>
	MEI (Middle East International Services)	<a href="http://www.arabicspecialists.com/code_of_ethics.asp">http://www.arabicspecialists.com/code_of_ethics.asp</a>
	Khun Translation Services	<a href="http://www.khuntranslation.com/modules/secions/index.php?op=viewarticle@artid=9">http://www.khuntranslation.com/modules/secions/index.php?op=viewarticle@artid=9</a>

	The Polish Translator	<a href="http://www.thepolishtranslator.com/ethics.html">http://www.thepolishtranslator.com/ethics.html</a>
정부기관	SPB (Canada's State Personnel Board)	<a href="http://www.spb.ca.gov/WorkArea/downloadasset.aspx?id=1664">http://www.spb.ca.gov/WorkArea/downloadasset.aspx?id=1664</a>
	UN Translation Service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a href="http://www.un.org/icty/legaldoc-e/basic/codeinter/IT144.htm">http://www.un.org/icty/legaldoc-e/basic/codeinter/IT144.htm</a>
개인 번역사	Julio Vasquez-Professional Translator	<a href="http://tampatranslator.com/codeofethics.html">http://tampatranslator.com/codeofethics.html</a>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sup>3</sup>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각 나라별로 번역사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윤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고, 미국의 메인 주, 텍사스 주,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 등 한 나라 안에서 주별로 윤리 강령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법 통역번역사를 위한 윤리 강령, 의료 통역번역사를 위한 윤리 강령, 문학번역가를 위한 윤리 강령 등 활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해외의 경우에는 번역사들이 개인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윤리 강령이나 지침을 명확히 의뢰인이나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번역 과정의 일부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 관련 지침을 이처럼 번역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협회에서 중시하는 것은 번역 윤리에 대한 논의가 정착되어 당연히 명시하고 준수해야 할 필수조항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국내에는 우선 번역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거나 대변할 협회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번역학을 연구하는 학회는 최근 들어 여러 학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전문 번역사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번역사 협회는 한국번역사협회가 거의 유일하다. 그 외에 번역 회사나 에이전시는 많으나 윤리 강령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몇 군데 사례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sup>3</sup> 지면 관계상 각 유형별로 극히 일부 사례만을 소개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up>4</sup> 각 업체명은 일부 글자를 X자로 처리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표 2. 윤리 규정 관련 국내 현황

기관 구분	기관 이름	번역 윤리 규정 유무	비고
번역 협회	한국번역가협회	-	국제번역가연맹(FIT)의 윤리 강령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올려놓음
번역 에이전시	트랜스XXX	X	윤리 관련 언급 없음
	XX번역통역	X	윤리 관련 언급 없음
	XX트랜스	X	윤리 관련 언급 없음
	서울XXX	X	경영 활동, 사회적 책임, 근무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 강령은 있으나 번역 관련 윤리 강령은 없음
	X트랜스	-	품질관리 방안란에 비밀 유지와 보안 언급함
	번역XX	-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기밀 유지 언급함
	XX나라	-	고객센터란에 기밀 유지 언급함
	XX번역서비스	O	품질관리 활동에 번역 윤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XXX코리아	O	번역 업무 공정란에 번역 일정 엄수, 고품질 번역, 번역 오류 방지, 4중 감수, 번역 완성도 극대화 명시함	

번역 회사나 에이전시의 경우, 모두 찾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검색어 상단에 소개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윤리 관련 내용을 전혀 싣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대다수였고, 웹사이트의 한 페이지를 할애해 윤리 강령을 소개한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번역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소개된 경우는 비밀 유지 시스템을 소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드물기는 하지만 번역 진행 절차, 번역 과정이나 결과물에서 특히 유의 사항 등이 품질관리나 업무공정 페이지에 소개된 경우가 있었다.

### 2.3. 번역 윤리 강령의 구성 내용

해외의 번역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 강령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원칙, 정의, 번역 수준, 의무 사항, 서비스의 질, 번역사의 자세, 고용 조건, 자격 요건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국제번역가연맹(FIT)에서 번역가 현장을 제시한 홈페이지 화면이다.



여러 협회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리 규정 항목을 살펴 보면 크게 번역사라는 직업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제 번역을 할 때 준수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협회에서 어떠한 조항들을 두고 있는지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 3. 윤리 규정 내용

번역협회	윤리 규정
미국 번역협회 (ATA)	(의무) 원문을 읽는 듯한 충실성과 정확성, 기밀 유지, 주제 지식과 언어 능력, 가용시간을 고려한 작업 수행, 동료 번역사와 전문지식 공유, 불공정 경쟁 금지, 직업 품위 유지, 불법적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번역 거부, 본인의 직업과 동료에 헌신, (권리) 여타 직업의 전문가들과 동등한 지위, 경력/전문지식/완성도에 상응하는 보수, 작업 환경, 불공정 경쟁 거부, 여타 직업의 전문가들과 동등한 사회보장 및 세계 적용, 출판이나 공연을 목적으로 한 번역시 번역사 명시, 출판물의 인세를 받을 권리, 출판이나 공연 목적의 번역물에서 번역사의 동의 없이 수정 금지
영국 통번역사 협회 (ITI)	(직업 측면) 과대 광고 금지, 동료 간 상호 협력, 하청 작업 금지, 기밀 유지, 직업 품위 유지, (번역 측면) 모국어 방향으로만 번역, 의미/어역(register)의 충실성, 본인의 번역에 대한 절대적 책임, 원문에 에러/생략/모호성 발견시 의뢰인에게 확인, 언어 능력/주제 지식에 적절한 작업 선택, (계약 측면) 협회의 계약 기준 및 조건 준수, 대리인과 계약시 유의, 협회의 지침에 어긋나는 작업 거절, 고용주에게 성실한 서비스 제공, (고용주의 의무 및 권리) 고용주는 협회의 번역사에게 우선권 부여, 번역사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캐나다 앨버타 통번역사 협회 (ATIA)	직업 측면의 규정, 번역 능력 및 자격 요건, 성실성과 기밀 유지, 객관적/중립적 태도, 충실성(직역과 혼동 금지,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변안도 가능), 번역 품질 보장, 성실성, 저작권, 편집자/감수자도 번역사와 동일한 윤리 규정 준수, 의뢰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작업 환경,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방적 작업 종료 금지, 번역물에 대한 책임, 번역료, 마감 시한, 번역 서비스 분야의 전체적 품질 향상, 광고 및 홍보 관련, 부당 행위의 경우 열거, 윤리위원회의 의무, 청문회
호주 통번역사 협회 (AUSIT)	직업 측면의 규정, 기밀 유지, 번역 능력, 정확성, 고용 조건, 자기 계발, 구성원 간 연대의식
캐나다 온타리오 통번역사 협회 (ATIO)	직업적 의무(행동 양식, 작업 범위, 협회 도용 금지, 독립성 유지), 서비스 품질(번역 능력, 충실성과 정확성, 책임 의식, 의뢰인에 대한 차별 금지), 공익 보호(성실성, 과대 광고 금지), 기밀 유지, 번역료, 업계 품위 유지(이미지, 다른 번역사들과의 관계), 부당 행위 금지

위의 표를 보면 여러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번역물의 질과 완성도, 전문가로서 준수해야 할 직업 윤리, 의무 사항, 서비스의 품질, 번역사의 전문가적 자세, 고용 조건,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물의 기준으로는 충실성과 정확성을 언급하는데, 충실성이 흔히 생각하는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이 흥미롭다. 또한 번역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언어 능력과 주제 지식,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는 책임감과 번역사로서의 품위 유지도 윤리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기밀 유지 부당 행위 거부, 고객과 번역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적절한 보상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고, 동료 번역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협력 및 지식 공유, 연대의식 함양, 공정 경쟁 유지, 부당 행위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통번역사협회(ITI)의 경우, 번역사의 윤리 조항뿐 아니라 번역을 의뢰한 의뢰인이나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제시하고 있고, 캐나다통번역사협회(ATIA)의 경우, 번역사의 윤리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회부되고 청문회를 여는 등의 절차까지 규정해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외국의 경우, 번역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윤리 규정으로 각 협회나 기관의 홈페이지에 분명히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윤리 규범을 소개한 경우는 국제번역가연맹(IFT)에서 제정한 번역가 헌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제번역가연맹의 번역가 헌장은 총 5조 40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는 번역가의 일반적 의무, 번역가의 권리, 번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번역가 협회 및 조합, 번역가 단체 및 국제번역가연맹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번역가연맹의 번역가 헌장은 ‘모든 번역은 원문에 충실해야 하며, 원문의 기본 개념과 형식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충실한 번역을 직역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조항을 두어 충실한 번역을 언급하되 충실성을 협의로 정의하지 않고, ‘번역가는 원문의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일반 지식을 광범위하게 보유해야 하며, 번역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여 번역사의 언어적·문화적 번역 능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 노동자로서의 번역가를 조망하여 법적 보호, 저작권 보유, 번역물 사용과 관련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보수 및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권리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5조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번역가 단체는 국제번역가연맹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번역가연맹은 번역가의 물리적·윤리적 권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번역과 관련된 이론적·실무적 사안의 진

행 사항을 주시하며 전 세계의 문명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등 여러 항에 걸쳐 국제 번역가연맹의 역할과 국제번역가연맹을 중심으로 한 각국 번역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번역사 협회에서 윤리 규정으로 소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 3. 결론

사회적으로 번역이 ‘번역 능력이 뛰어난 번역사가 전문적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사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 윤리 강령이 번역가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번역 협회나 회사, 전문 번역사들의 단체를 중심으로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명시하면 번역사에게는 번역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금 성찰하는 기회가 되고, 의뢰인에게는 전문 번역사 집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번역 윤리 규정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지 고찰하기 위하여 서구 번역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번역 윤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뒤, 실제 해외 번역 관련 단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윤리 강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황 조사를 위해 살펴본 결과, 해외에서는 이미 정부 산하 기관, 각종 번역사 협회, 번역 에이전시, 심지어 개인 번역사 차원에서까지 번역 윤리 강령을 중시하여 웹사이트의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명확히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 윤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번역사가 번역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어떠한 번역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윤리적인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번역사라는 전문 직업에 종사할 때 직업 특성에 따른 행동상의 윤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번역 윤리 규정이 번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확고히 정착될 때 번역사는 번역 윤리를 되새기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의뢰인은 번역사를 신뢰하고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번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번역이라는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윤리 관련 내용을 국내 번역 관련 기관들이 규정이나 헌장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번역 윤리에 관심을 기울여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되기를 촉구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윤리 강령이나 헌장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향후 후속 연구로 해외 번역학계의 윤리 관련 이론적 시각을 면밀히 고찰하여 국내 윤리 강령의 내용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신지선 (2008). 번역 윤리를 함양하기 위한 번역사 윤리 현장 제정의 필요성 고찰.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08 가을, 학술대회 발표 논문.
- Chesterman, A. (2001). Proposal for a Hieronymic Oath. *The Translator* 7(2): 139-154.
- Drugan, J. (2008). Ethics in Translator Training'. <http://www.powershow.com/view/1f55dd-ZTRkM> (2012년 5월 4일 검색).
- Howard, D. (2009). Translation Ethics More than You See in the Codes. [www.chicata.org/multimedia/May09-DHoward.ppt](http://www.chicata.org/multimedia/May09-DHoward.ppt) (2012년 5월 4일 검색).
- Pym, A. (1992). *Translation and Text Transfer: An Essay on the Principl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Frankfurt/Main, Vienna: Peter Lang.
- \_\_\_\_\_ (2001). Introduction: The return to ethics in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or* 7(2): 129-138
- \_\_\_\_\_ (2003). Translational ethics and electronic technologies. A paper presented at the VI Seminario de Tradução Científica e Técnica em Língua Portuguesa A Profissionalização do Tradutor, Fundação Lisbon on 11 November 2003.

---

### **Author's email address**

jisunshin@ewha.ac.kr

### **About the author**

Jisun Shin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ranslation at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oul, South Korea. She is currently serving as Assistant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Her primary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or training and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www.kci.go.kr